

행정안전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연 월 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별 단위비용 금액을 조정하고,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산정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조정하며,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수요 중 접경지역, 폐광 지역진흥지구 등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공공보건의료 수요 및 기회발전특구 수요를 보정수요 항목에 각각 추가하며, 자체노력과 관련된 반영항목 중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패널티를 폐지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교부액의 산정방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입 반영 합리화(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별표5)

- 1) 일반조정교부금에 준하여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조정교부금을 보정수요·보정수입에 각각 반영

나.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별표4)

- 1)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공공보건의료 수요를 신설
- 2) 지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기회발전특구 수요를 신설
- 3)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수요를 신설

다. 지역경제 활력 확산(별표4, 별표6)

- 1)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자체노력 페널티 폐지
- 2)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접경지역,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각각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라.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별표4)

- 1)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에 대한 재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확대
- 2)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30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각각 상향

마. 지방 필수기능 보장(별표4)

- 1) 상시화된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일몰을 폐지하고, 재난안전투자 수요 산정방식을 안전·보건예산에서 재난안전예산으로 변경
- 2)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수요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일몰을 3년 연장

바.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개정(별표12)

- 1)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여 교부하도록 산정방식을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1.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방재정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시·
군 조정교부금

제7조제1항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지방재정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시·
군 조정교부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6년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1항 에 따라 보정된 기준재정수요액 에 추가하여 보정한다. 1. 광역시·도: 다음 각 목의 금 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 가. ~ 다. (생 략) <u><신 설></u> 2. ~ 4. (생 략)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지방재정법」 제29조제 4항에 따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시·군 조정교부금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 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생 략) 3. 시·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 하는 금액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 ----- -----. 2. (현행과 같음) 3. ----- ----- ----- -----

가. ~ 다. (생략) 라. 삭제 <u><신설></u> 4. ~ 6. (생략) ②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마. 「지방재정법」 제29조제</u> <u>4항에 따른 장외발매소분</u> <u>례저세 시·군 조정교부금</u>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별표 1]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 · 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단위 : 원)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단위 : 원)
1. 일반행정비	가. 인건비	공무원 수	명	특별시	특별시	65,436,840
				광역시	광역시	65,415,11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63,443,480
				도 · 특별자치도	도 · 특별자치도	53,736,170
				시	시	64,421,750
				군	군	65,467,440
	나. 일반관리비	공무원 수	명	특별시	특별시	30,229,040
				광역시	광역시	30,489,53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27,198,020
				도 · 특별자치도	도 · 특별자치도	14,746,210
	다. 안전관리비	인구 수	명	시	시	37,104,720
				군	군	34,285,470
				특별시	특별시	39,700
				광역시	광역시	39,11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50,210
				도 · 특별자치도	도 · 특별자치도	29,720
				시	시	46,510
				군	군	183,560

현행						개정안	
2. 문 화 환 경 비	가. 문화관광비	인구 수	명	특별시	<u>49,190</u>	특별시	<u>49,190</u>
				광역시	<u>109,610</u>	광역시	<u>109,610</u>
				특별자치시	<u>110,920</u>	특별자치시	<u>110,920</u>
				도·특별자치도	<u>35,070</u>	도·특별자치도	<u>35,070</u>
	나. 환경보호비	인구 수	명	시	<u>122,060</u>	시	<u>122,060</u>
				군	<u>332,630</u>	군	<u>332,630</u>
				특별시	<u>97,370</u>	특별시	<u>97,370</u>
				광역시	<u>117,750</u>	광역시	<u>117,750</u>
				특별자치시	<u>139,450</u>	특별자치시	<u>139,450</u>
				도·특별자치도	<u>17,370</u>	도·특별자치도	<u>17,370</u>
				시	<u>156,300</u>	시	<u>156,300</u>
				군	<u>410,830</u>	군	<u>410,830</u>
3. 사 회 복 지 비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명	특별시	<u>984,960</u>	특별시	<u>984,960</u>
				광역시	<u>709,360</u>	광역시	<u>709,360</u>
				특별자치시	<u>377,650</u>	특별자치시	<u>377,650</u>
				도·특별자치도	<u>276,430</u>	도·특별자치도	<u>276,430</u>
	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 수	명	시	<u>289,060</u>	시	<u>289,060</u>
				군	<u>397,050</u>	군	<u>397,050</u>
				특별시	<u>758,850</u>	특별시	<u>758,850</u>
				광역시	<u>1,134,840</u>	광역시	<u>1,134,840</u>
				특별자치시	<u>888,670</u>	특별자치시	<u>888,670</u>
				도·특별자치도	<u>164,160</u>	도·특별자치도	<u>164,160</u>
				시	<u>902,510</u>	시	<u>902,510</u>
				군	<u>1,047,920</u>	군	<u>1,047,920</u>

현행						개정안	
4.	다. 아동복지비	아동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 군	<u>1,977,840</u> <u>1,872,380</u> <u>1,046,260</u> <u>347,440</u> <u>1,310,060</u> <u>2,137,240</u>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 군	<u>1,977,840</u> <u>1,872,380</u> <u>1,046,260</u> <u>347,440</u> <u>1,310,060</u> <u>2,137,240</u>
	라.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 군	<u>2,016,350</u> <u>2,067,700</u> <u>1,386,300</u> <u>265,740</u> <u>1,303,080</u> <u>1,222,980</u>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 군	<u>2,016,350</u> <u>2,067,700</u> <u>1,386,300</u> <u>265,740</u> <u>1,303,080</u> <u>1,222,980</u>
	마. 보건사회복지비	인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 군	<u>148,060</u> <u>139,890</u> <u>97,170</u> <u>42,400</u> <u>115,460</u> <u>272,370</u>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 군	<u>148,060</u> <u>139,890</u> <u>97,170</u> <u>42,400</u> <u>115,460</u> <u>272,370</u>
	가. 농업비	경지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 군	<u>1,913,780</u> <u>276,550</u> <u>208,350</u> <u>82,480</u> <u>387,310</u> <u>365,700</u>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 군	<u>1,913,780</u> <u>276,550</u> <u>208,350</u> <u>82,480</u> <u>387,310</u> <u>365,700</u>

현행						개정안	
지 역 경 제 비	나. 임수산비	산림·어장·갯벌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u>468,770</u>	특별시	<u>468,770</u>
				광역시	<u>94,970</u>	광역시	<u>94,970</u>
				특별자치시	<u>35,750</u>	특별자치시	<u>35,750</u>
				도·특별자치도	<u>86,200</u>	도·특별자치도	<u>86,200</u>
				시	<u>47,930</u>	시	<u>47,930</u>
				군	<u>41,200</u>	군	<u>41,200</u>
	다. 산업경제비	사업체 종사자 수	명	특별시	<u>59,830</u>	특별시	<u>59,830</u>
				광역시	<u>235,080</u>	광역시	<u>235,080</u>
				특별자치시	<u>292,190</u>	특별자치시	<u>292,190</u>
				도·특별자치도	<u>111,200</u>	도·특별자치도	<u>111,200</u>
				시	<u>251,810</u>	시	<u>251,810</u>
				군	<u>408,500</u>	군	<u>408,500</u>
지 역 경 제 비	라. 도로관리비	도로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u>5,447,100</u>	특별시	<u>5,447,100</u>
				광역시	<u>6,107,750</u>	광역시	<u>6,107,750</u>
				특별자치시	<u>7,764,040</u>	특별자치시	<u>7,764,040</u>
				도·특별자치도	<u>8,747,080</u>	도·특별자치도	<u>8,747,080</u>
				시	<u>7,746,470</u>	시	<u>7,746,470</u>
				군	<u>9,727,620</u>	군	<u>9,727,620</u>
	마. 교통관리비	자동차 대수	대	특별시	<u>94,140</u>	특별시	<u>94,140</u>
				광역시	<u>166,890</u>	광역시	<u>166,890</u>
				특별자치시	<u>67,610</u>	특별자치시	<u>67,610</u>
				도·특별자치도	<u>35,550</u>	도·특별자치도	<u>35,550</u>
				시	<u>229,140</u>	시	<u>229,140</u>
				군	<u>235,270</u>	군	<u>235,270</u>

현행						개정안	
	바. 지역관리비	행정구역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u>2,418,440</u>	특별시	<u>2,418,440</u>
				광역시	<u>257,380</u>	광역시	<u>257,380</u>
				특별자치시	<u>89,160</u>	특별자치시	<u>89,160</u>
				도·특별자치도	<u>7,010</u>	도·특별자치도	<u>7,010</u>
				시	<u>102,720</u>	시	<u>102,720</u>
				군	<u>44,700</u>	군	<u>44,700</u>
※ 단위비용 산정방식 : <u>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합</u>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수치의 합							

[별표 2]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						
경비의 종류	산정방식		비고(ω)		산정방식	비고(ω)
1. 인건비	시·도 시·군 · 구	$Y_i = \text{기준인건비} \times \left(\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일반회계+특별회계)}} \right)$ ※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하되,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소방인건비는 제외한다.	<u>특별시(0.7410)</u> <u>광역시(0.7436)</u> <u>특별자치시(0.7507)</u> <u>도·특별자치도(0.7301)</u> <u>시(0.7320)</u> <u>군(0.7183)</u> <u>구(0.7695)</u>	시·도 시·군 · 구	$Y_i = \text{기준인건비} \times \left(\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일반회계+특별회계)}} \right)$ ※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하되,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소방인건비는 제외한다.	<u>특별시(0.7410)</u> <u>광역시(0.7436)</u> <u>특별자치시(0.7507)</u> <u>도·특별자치도(0.7301)</u> <u>시(0.7320)</u> <u>군(0.7183)</u> <u>구(0.7695)</u>
2. 일반관리비	시·도	$\ln Y_i = \{4.10823 + 0.93547 \ln(\text{Ge} + \text{La})\} + \ln \omega$	<u>특별시(0.6908)</u> <u>광역시(0.7098)</u>	시·도	$\ln Y_i = \{4.10823 + 0.93547 \ln(\text{Ge} + \text{La})\} + \ln \omega$	<u>특별시(0.6908)</u> <u>광역시(0.7098)</u>
	시·군 · 구	$\ln Y_i = \{4.10823 + 0.93547 \ln(\text{Ge} + \text{La})\} + \ln \omega$	<u>특별자치시(0.7358)</u> <u>도·특별자치도(0.4299)</u> <u>시(0.9751)</u> <u>군(0.8523)</u> <u>구(0.8948)</u>	시·군 · 구	$\ln Y_i = \{4.10823 + 0.93547 \ln(\text{Ge} + \text{La})\} + \ln \omega$	<u>특별자치시(0.7358)</u> <u>도·특별자치도(0.4299)</u> <u>시(0.9751)</u> <u>군(0.8523)</u> <u>구(0.8948)</u>
	※ Ge: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La: 지방의원 수			※ Ge: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La: 지방의원 수		

현행				개정안			
3. 안전관리비	시·도	$\ln Y_i = \{-2.51985 + 0.61163 \ln P + 0.78461 \ln(Df + Fs)\} + \ln \omega$		시·도	$\ln Y_i = \{-2.51985 + 0.61163 \ln P + 0.78461 \ln(Df + Fs)\} + \ln \omega$		
	특별자치시	$\ln Y_i = \ln(e^{\{-2.51985 + 0.61163 \ln P + 0.78461 \ln(Df + Fs)\}} \times \omega + 0.01639Sr)$	특별시(0.7082) 광역시(0.7006) 특별자치시(1.1122) 도·특별자치도(0.7870)	특별자치시	$\ln Y_i = \ln(e^{\{-2.51985 + 0.61163 \ln P + 0.78461 \ln(Df + Fs)\}} \times \omega + 0.01639Sr)$	특별시(0.7082) 광역시(0.7006) 특별자치시(1.1122) 도·특별자치도(0.7870)	
	시·군·구	$Y_i = (1017.69356 + 0.01946P + 0.01078A + 0.00743Sr) \times \omega$	시(1.0588) 군(0.8636) 구(0.7456)	시·군·구	$Y_i = (1017.69356 + 0.01946P + 0.01078A + 0.00743Sr) \times \omega$	시(1.0588) 군(0.8636) 구(0.7456)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Df: 재난관리대상시설 수, Fs: 소방관서 수, Sr: 소화전 길이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Df: 재난관리대상시설 수, Fs: 소방관서 수, Sr: 소화전 길이			
4. 문화관광비	시·도	$\ln Y_i = (1.9064 + 0.33002 \ln P + 0.36483 \ln A) + \ln \omega$	특별시(0.9040) 광역시(1.0392) 특별자치시(0.7584) 도·특별자치도(0.3681)	시·도	$\ln Y_i = (1.9064 + 0.33002 \ln P + 0.36483 \ln A) + \ln \omega$	특별시(0.9040) 광역시(1.0392) 특별자치시(0.7584) 도·특별자치도(0.3681)	
	시·군·구	$\ln Y_i = (1.9064 + 0.33002 \ln P + 0.36483 \ln A) + \ln \omega$	시(0.8636) 군(0.5728) 구(0.6757)	시·군·구	$\ln Y_i = (1.9064 + 0.33002 \ln P + 0.36483 \ln A) + \ln \omega$	시(0.8636) 군(0.5728) 구(0.6757)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현행				개정안			
5. 환경보호비	시·도	$\ln Yi = (3.89908 + 0.36643 \ln P + 0.17996 \ln A) + \ln \omega$	특별시(0.8115) 광역시(0.6926)	시·도	$\ln Yi = (3.89908 + 0.36643 \ln P + 0.17996 \ln A) + \ln \omega$	특별시(0.8115) 광역시(0.6926)	
	시·군·구	$Yi = (-1314.29744 + 0.12294P + 0.03876A) \times \omega$	특별자치시(0.9097) 도·특별자치도(0.2898)	시·군·구	$Yi = (-1314.29744 + 0.12294P + 0.03876A) \times \omega$	특별자치시(0.9097) 도·특별자치도(0.2898)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시(0.8610) 군(0.6923) 구(0.6610)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시(0.8610) 군(0.6923) 구(0.6610)	
6. 기초생활보장비	시·도	$\ln Yi = (-1.96851 + 1.10245 \ln BI) + \ln \omega$	특별시(1.0307) 광역시(0.6535)	시·도	$\ln Yi = (-1.96851 + 1.10245 \ln BI) + \ln \omega$	특별시(1.0307) 광역시(0.6535)	
	시·군·구	$\ln Yi = (1.09998 + 0.80023 \ln BI) + \ln \omega$	특별자치시(0.9926) 도·특별자치도(0.5227)	시·군·구	$\ln Yi = (1.09998 + 0.80023 \ln BI) + \ln \omega$	특별자치시(0.9926) 도·특별자치도(0.5227)	
	※ B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생계+의료+주거+교육)		시(0.7895) 군(0.7930) 구(1.0993)	※ B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생계+의료+주거+교육)		시(0.7895) 군(0.7930) 구(1.0993)	
7. 노인복지비	시·도	$\ln Yi = (2.99237 + 0.71696 \ln Sc) + \ln \omega$	특별시(0.5758)	시·도	$\ln Yi = (2.99237 + 0.71696 \ln Sc) + \ln \omega$	특별시(0.5758)	
	특별자치시	$\ln Yi = \ln(e^{(2.99237 + 0.71696 \ln Sc)} \times \omega + 7.2477Sh)$	광역시(1.0737) 특별자치시(0.9026) 도·특별자치도(0.3833)	특별자치시	$\ln Yi = \ln(e^{(2.99237 + 0.71696 \ln Sc)} \times \omega + 7.2477Sh)$	광역시(1.0737) 특별자치시(0.9026) 도·특별자치도(0.3833)	
	시·군·구	$\ln Yi = (2.11483 + 0.7007 \ln Sc + 0.19128 \ln Sh) + \ln \omega$	시(0.9407) 군(0.7768) 구(0.7357)	시·군·구	$\ln Yi = (2.11483 + 0.7007 \ln Sc + 0.19128 \ln Sh) + \ln \omega$	시(0.9407) 군(0.7768) 구(0.7357)	
	※ Sc: 노령인구 수, Sh: 경로당 수(신고)			※ Sc: 노령인구 수, Sh: 경로당 수(신고)			

현행				개정안			
8. 아동복지비	시·도	$\ln Yi = (1.76148 + 0.84519 \ln Ch) + \ln \omega$	<u>특별시(0.9524)</u> <u>광역시(0.7221)</u>	시·도	$\ln Yi = (1.76148 + 0.84519 \ln Ch) + \ln \omega$	<u>특별시(0.9524)</u> <u>광역시(0.7221)</u>	
	시·군·구	$\ln Yi = (3.34004 + 0.73462 \ln Ch) + \ln \omega$	<u>특별자치시(1.0458)</u> <u>도·특별자치도(0.4841)</u>	시·군·구	$\ln Yi = (3.34004 + 0.73462 \ln Ch) + \ln \omega$	<u>특별자치시(1.0458)</u> <u>도·특별자치도(0.4841)</u>	
	※ Ch: 아동 수		<u>시(0.8810)</u> <u>군(0.8204)</u> <u>구(0.8259)</u>	※ Ch: 아동 수		<u>시(0.8810)</u> <u>군(0.8204)</u> <u>구(0.8259)</u>	
9. 장애인 복지비	시·도	$\ln Yi = (1.3209 + 0.89777 \ln Dp) + \ln \omega$	<u>특별시(0.7972)</u> <u>광역시(0.8234)</u>	시·도	$\ln Yi = (1.3209 + 0.89777 \ln Dp) + \ln \omega$	<u>특별시(0.7972)</u> <u>광역시(0.8234)</u>	
	시·군·구	$Yi = (-196.28436 + 1.58583 Dp) \times \omega$	<u>특별자치시(0.9734)</u> <u>도·특별자치도(0.2513)</u>	시·군·구	$Yi = (-196.28436 + 1.58583 Dp) \times \omega$	<u>특별자치시(0.9734)</u> <u>도·특별자치도(0.2513)</u>	
	※ Dp: 등록장애인 수		<u>시(0.8279)</u> <u>군(0.7933)</u> <u>구(0.7727)</u>	※ Dp: 등록장애인 수		<u>시(0.8279)</u> <u>군(0.7933)</u> <u>구(0.7727)</u>	
10. 보건사회 복지비	시·도	$\ln Yi = (-0.72507 + 0.88666 \ln P) + \ln \omega$	<u>특별시(0.9058)</u>	시·도	$\ln Yi = (-0.72507 + 0.88666 \ln P) + \ln \omega$	<u>특별시(0.9058)</u>	
	특별자치시	$\ln Yi = \ln(e^{(-0.72507 + 0.88666 \ln P) \times \omega + 0.08435 Hf})$	<u>광역시(0.6820)</u> <u>특별자치시(0.8580)</u>	특별자치시	$\ln Yi = \ln(e^{(-0.72507 + 0.88666 \ln P) \times \omega + 0.08435 Hf})$	<u>광역시(0.6820)</u> <u>특별자치시(0.8580)</u>	
	시·군·구	$Yi = (444.48128 + 0.08427P + 1.42525Hf) \times \omega$	<u>도·특별자치도(0.5023)</u>	시·군·구	$Yi = (444.48128 + 0.08427P + 1.42525Hf) \times \omega$	<u>도·특별자치도(0.5023)</u>	
	※ P: 인구 수, Hf: 보건시설 면적		<u>시(0.8568)</u> <u>군(0.7704)</u> <u>구(0.7431)</u>	※ P: 인구 수, Hf: 보건시설 면적		<u>시(0.8568)</u> <u>군(0.7704)</u> <u>구(0.7431)</u>	

현행				개정안			
11. 농업비	시·도	$\ln Y_i = (3.48284 + 0.59438 \ln Ac) + \ln \omega$	특별시(0.7566) 광역시(0.6994)	시·도	$\ln Y_i = (3.48284 + 0.59438 \ln Ac) + \ln \omega$	특별시(0.7566) 광역시(0.6994)	
	시·군·구	$Y_i = (3503.04918 + 0.37135 Ac) \times \omega$	특별자치시(0.6880) 도·특별자치도(0.9571)	시·군·구	$Y_i = (3503.04918 + 0.37135 Ac) \times \omega$	특별자치시(0.6880) 도·특별자치도(0.9571)	
	※ Ac: 경지 면적(전+답+과)		시(0.9609) 군(0.9129) 구(0.2756)	※ Ac: 경지 면적(전+답+과)		시(0.9609) 군(0.9129) 구(0.2756)	
12. 임수산비	시·도	$Y_i = \{6428.68567 + 0.02754 F_o + 0.05052(F_g + M_f)\} \times \omega$	특별시(1.1234) 광역시(1.3326)	시·도	$Y_i = \{6428.68567 + 0.02754 F_o + 0.05052(F_g + M_f)\} \times \omega$	특별시(1.1234) 광역시(1.3326)	
	시·군·구	$Y_i = \{3642.07033 + 0.02885 F_o + 0.07701(F_g + M_f)\} \times \omega$	특별자치시(0.6475) 도·특별자치도(1.6228)	시·군·구	$Y_i = \{3642.07033 + 0.02885 F_o + 0.07701(F_g + M_f)\} \times \omega$	특별자치시(0.6475) 도·특별자치도(1.6228)	
	※ Fo: 산림 면적, Fg: 어장 면적, Mf: 갯벌 면적		시(1.0535) 군(0.9021) 구(0.4799)	※ Fo: 산림 면적, Fg: 어장 면적, Mf: 갯벌 면적		시(1.0535) 군(0.9021) 구(0.4799)	
13. 산업경제비	시·도	$\ln Y_i = (4.68186 + 0.55049 \ln Ce) + \ln \omega$	특별시(0.4059) 광역시(0.9611)	시·도	$\ln Y_i = (4.68186 + 0.55049 \ln Ce) + \ln \omega$	특별시(0.4059) 광역시(0.9611)	
	시·군·구	$Y_i = (14721 + 0.09687 Ce) \times \omega$	특별자치시(0.5793) 도·특별자치도(0.6923)	시·군·구	$Y_i = (14721 + 0.09687 Ce) \times \omega$	특별자치시(0.5793) 도·특별자치도(0.6923)	
	※ Ce: 사업체 종사자 수		시(1.2916) 군(0.6072) 구(0.1232)	※ Ce: 사업체 종사자 수		시(1.2916) 군(0.6072) 구(0.1232)	

현행				개정안			
14. 도로관리비	시·도	$Y_i = (4238.0458 + 7.55253Ro) \times \omega$	특별시(0.3984) 광역시(0.7032)	시·도	$Y_i = (4238.0458 + 7.55253Ro) \times \omega$	특별시(0.3984) 광역시(0.7032)	
	시·군·구	$Y_i = (4238.0458 + 7.55253Ro) \times \omega$	특별자치시(0.8811) 도·특별자치도(1.1170)	시·군·구	$Y_i = (4238.0458 + 7.55253Ro) \times \omega$	특별자치시(0.8811) 도·특별자치도(1.1170)	
	※ Ro: 도로(포장+비포장+미개통) 면적		시(0.9152) 군(0.8865) 구(0.6699)	※ Ro: 도로(포장+비포장+미개통) 면적		시(0.9152) 군(0.8865) 구(0.6699)	
15. 교통관리비	시·도	$Y_i = (8725.66594 + 0.09157Ca) \times \omega$	특별시(0.8656)	시·도	$Y_i = (8725.66594 + 0.09157Ca) \times \omega$	특별시(0.8656)	
	특별자치시	$Y_i = (8725.66594 + 0.09157Ca) \times \omega + 0.02054A$	광역시(1.4702) 특별자치시(0.4949)	특별자치시	$Y_i = (8725.66594 + 0.09157Ca) \times \omega + 0.02054A$	광역시(1.4702) 특별자치시(0.4949)	
	시·군·구	$\ln Y_i = (-5.87882 + 0.62901 \ln Ca + 0.63553 \ln A) + \ln \omega$	도·특별자치도(0.3694) 시(1.8977) 군(0.8668) 구(0.5691)	시·군·구	$\ln Y_i = (-5.87882 + 0.62901 \ln Ca + 0.63553 \ln A) + \ln \omega$	도·특별자치도(0.3694) 시(1.8977) 군(0.8668) 구(0.5691)	
	※ Ca: 자동차 대수, A: 행정구역 면적			※ Ca: 자동차 대수, A: 행정구역 면적			
16. 지역관리비	시·도	$\ln Y_i = (2.38909 + 0.35874 \ln A + 0.29349 \ln P) + \ln \omega$	특별시(6.6115) 광역시(1.1293)	시·도	$\ln Y_i = (2.38909 + 0.35874 \ln A + 0.29349 \ln P) + \ln \omega$	특별시(6.6115) 광역시(1.1293)	
	특별자치시	$\ln Y_i = \ln(e^{(2.38909 + 0.35874 \ln A + 0.29349 \ln P)} \times \omega + 0.01146 Ri)$	특별자치시(0.8179) 도·특별자치도(0.2828)	특별자치시	$\ln Y_i = \ln(e^{(2.38909 + 0.35874 \ln A + 0.29349 \ln P)} \times \omega + 0.01146 Ri)$	특별자치시(0.8179) 도·특별자치도(0.2828)	
	시·군·구	$Y_i = (-1907.36938 + 0.02809A + 0.08087P + 0.08069 Ri) \times \omega$	시(1.0857) 군(0.8446) 구(0.6852)	시·군·구	$Y_i = (-1907.36938 + 0.02809A + 0.08087P + 0.08069 Ri) \times \omega$	시(1.0857) 군(0.8446) 구(0.6852)	
	※ A: 행정구역 면적, P: 인구 수, Ri: 하천 길이			※ A: 행정구역 면적, P: 인구 수, Ri: 하천 길이			

현행	개정안
비고 1~3. (생략)	비고 1~3. (현행과 같음)

[별표 4]

현행		개정안	
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			
유형별 측정항목	산정방식	유형별 측정항목	산정방식
1. 지역균형			
가. (생략)		(현행과 같음)	
나. (생략)		(현행과 같음)	
다. (생략)		(현행과 같음)	
라. (생략)		(현행과 같음)	
마. (생략)		(현행과 같음)	
바. (생략)		(현행과 같음)	
사. (생략)		(현행과 같음)	
아. 축산·수산 (시·군·구)	(생략) ① 수산 • (생략)	아. 축산·수산 (시·군·구)	(현행과 같음) ② 수산 • (현행과 같음)
자. (생략)		(현행과 같음)	
차. (생략)		(현행과 같음)	
카. 낙후지역 등 (시·군·구)	① (생략)	카. 낙후지역 등 (시·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접경지역 •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40% ※ 접경지역 중 직전년도의 재정력지수(기준재		④ 접경지역 •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50% ※ 접경지역 중 직전년도의 재정력지수(기준재

현행		개정안	
	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가 0.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정액의 50%만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도, 9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가 0.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정액의 50%만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도, 9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폐광지역진흥지구 •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말한다)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40%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도, 9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성장촉진지역으로도 지정된 경우에는 두 수요 중 유리한 수요를 하나만 적용한다.		⑥ 폐광지역진흥지구 •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말한다)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50%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도, 9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성장촉진지역으로도 지정된 경우에는 두 수요 중 유리한 수요를 하나만 적용한다.
다. (생략)		(현행과 같음)	
파.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지역관리			
가. (생략)	<u><신설></u> - 유동인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A + B + C)* × 20% * A: 환경보호비, B: 도로관리비, C: 지역관리비 ※ 유동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다만,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현행과 같음)	<u>① 유동인구</u> - 유동인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A + B + C)* × 20% * A: 환경보호비, B: 도로관리비, C: 지역관리비 ※ 유동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다만,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나. 유동인구 (시·군·구)	<u><신설></u>	나. 유동인구 (시·군·구)	<u>② 생활인구</u> - 생활인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A + B + C)** × 10% × 조정계수 *** * 생활인구는 체류인구만 반영한다 ** A: 환경보호비, B: 도로관리비, C: 지역관리비 *** 조정계수 = 일 평균 체류인구 / 최근 1년 월 평균 체류인구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6년부터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동인구 수요액과 생활인구 수요액 중 더 유리한 수요액을 하나만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다. <u>시·도지정문화재</u> (시·군·구)	• <u>시·도지정문화재</u>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u>문화재</u> 1개당 문화재 예산* 일반재원 × 5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문화재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다. <u>시·도지정유산</u> (시·군·구)	• <u>시·도지정유산</u>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u>지정유산</u> 1개당 <u>지정유산</u> 예산* 일반재원 × 5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u>지정유산</u>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라. (생략)		(현행과 같음)	
마. (생략)		(현행과 같음)	
바. (생략)		(현행과 같음)	
<신설>		사. <u>재해복구 대응</u> (시·군·구)	•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인구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비 면적 1천㎡당 표준행정수요액) × 70%] × 2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전전년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현행		개정안	
3. 사회복지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비율 (시·군·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 <u>30%</u> ×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지방자치단체 } \Sigma A}$ $* A = \left(1 - \frac{\max X - Y}{\max X - \min X}\right) \times \text{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수}$ ※ maxX: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 의 비율값, minX: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 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 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도, 5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비율 (시·군·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 <u>33%</u> ×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지방자치단체 } \Sigma A}$ $* A = \left(1 - \frac{\max X - Y}{\max X - \min X}\right) \times \text{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수}$ ※ maxX: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 의 비율값, minX: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 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 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 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도, 5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나. 노령인구 비율 (시·군·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노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u>30%</u> ×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지방자치단체 } \Sigma A}$	나. 노령인구 비율 (시·군·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노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u>33%</u> ×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지방자치단체 } \Sigma A}$

현행		개정안	
	* $A = (1 - \frac{\max X - Y}{\max X - \min X}) \times \text{노령인구 수}$ ※ maxX: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minX: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고령단체 1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60%, 고령단체 2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90%, 고령단체 3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20%, 고령단체 4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80% 추가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A = (1 - \frac{\max X - Y}{\max X - \min X}) \times \text{노령인구 수}$ ※ maxX: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minX: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고령단체 1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60%, 고령단체 2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90%, 고령단체 3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20%, 고령단체 4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80% 추가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다. (생략)		(현행과 같음)	
라. 아동인구 비율 (시·군·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이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underline{30\%} \times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지방자치단체 } \Sigma A}$ * $A = (1 - \frac{\max X - Y}{\max X - \min X}) \times$ ※ maxX: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	라. 아동인구 비율 (시·군·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이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underline{33\%} \times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지방자치단체 } \Sigma A}$ * $A = (1 - \frac{\max X - Y}{\max X - \min X}) \times$ ※ maxX: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

현행		개정안	
	체의 비율값, minX: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의 비율값, minX: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마. 출산장려 (시·군·구)	• 0세 아동 수 × 지방자치단체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합계출산율 1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u>75%</u>, 합계출산율 2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u>150%</u>, 합계출산율 3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u>225%</u>, <u>합계출산율 4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300%</u>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마. 출산장려 (시·군·구)	• 0세 아동 수 × 지방자치단체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합계출산율 1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u>150%</u>, 합계출산율 2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u>300%</u>, 합계출산율 3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u>600%</u>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바. (생략)		(현행과 같음)	
사. 장애인 비율 (시·군·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u>30%</u> ×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지방자치단체 } \sum A}$ * $A = (1 - \frac{\text{maxX} - Y}{\text{maxX} - \text{minX}}) \times \text{장애인 수}$ ※ maxX: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	사. 장애인 비율 (시·군·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u>33%</u> ×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지방자치단체 } \sum A}$ * $A = (1 - \frac{\text{maxX} - Y}{\text{maxX} - \text{minX}}) \times \text{장애인 수}$ ※ maxX: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

현행		개정안	
	의 비율값, minX: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 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 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 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도, 5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의 비율값, minX: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 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 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 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도, 5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아. (생략)		(현행과 같음)	
자. (생략)		(현행과 같음)	
4. 시책수요 등			
가. (생략)		(현행과 같음)	
나. (생략)		(현행과 같음)	
다. 일자리 (시·군·구)	• <u>(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업률 × 동종 지방자치단 체별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3% + [(해 당 지방자치단체 고용률 × 조정계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u> <u>× 3%</u> <u>* 조정계수 =</u> $\frac{\text{동종 지자체 평균 실업률}}{\text{동종 지자체 평균 고용률}}$	다. 일자리 (시·군·구)	• <u>(해당 지방자치단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 동률**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표 준행정수요액) × 30% +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1인당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u> <u>*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u>

현행		개정안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u>2024년 산정분</u>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u>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u> <u>** 변동률 = 전전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u> <u>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u> <u>,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본다.</u>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u>2027년 산정분</u>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라. 재난안전투자 (시·도, 시·군·구)	• 총예산 대비 <u>안전·보건 예산*</u>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비 표준행정 수요액 × 10% * <u>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u> ※ 2026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라. 재난안전투자 (시·도, 시·군·구)	• 총예산 대비 <u>재난안전예산*</u>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비 표준행정 수요액 × 10%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한다.</u> ※ 2026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마. (생략)		(현행과 같음)	
바. (생략)		(현행과 같음)	
사. (생략)		(현행과 같음)	
아. (생략)		아. (현행 4-9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관과 같	

현행		개정안	
		음)	
자. (생략)		자. (현행 4-10 기업 지방이전 지원란과 같음)	
차. (생략)		차. (현행 4-11 소상공인 지원란과 같음)	
카. (생략)		카. (현행 4-12 청년 지원란과 같음)	
<신설>		다. 공공보건의료 지원(시·도, 시·군·구)	•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 인구 1인당 경상의료비 × 20%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분원 포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권역재활병원, 시·도 및 군 조례에 따른 시도/군립병원 ※ 2027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신설>		파. 저출생 세제지원(시·도, 시·군·구)	• 저출생 지원 관련 전전년도 지방세 감면액* ×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6조의2 및 제36조의5에 따른 감면액 ※ 2027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신설>		하. 기회발전특구(시·군·구)	• 기회발전특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특구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text{면적} \div \text{기획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 \times \text{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1\%$ * 광역시 : 4,950천㎡, 도 : 6,600천㎡ ※ 2027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비고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합계출산율의 유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합계출산율 1유형: 합계출산율이 0.78명 이상 0.98명 미만인 경우
 - 나. 합계출산율 2유형: 합계출산율이 0.98명 이상 1.18명 미만인 경우
 - 다. 합계출산율 3유형: 합계출산율이 1.18명 이상 1.38명 미만인 경우
 - 라. 합계출산율 4유형: 합계출산율이 1.38명 이상인 경우
5. (생략)

비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합계출산율의 유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합계출산율 1유형: 합계출산율이 0.721명 이상 0.837명 미만인 경우
 - 나. 합계출산율 2유형: 합계출산율이 0.837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 다. 합계출산율 3유형: 합계출산율이 1.000명 이상
(삭제)
5. (현행과 같음)

[별표 5]

현행				개정안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			
구분		산정방식		산정방식			
지방세	보통세	취 득 세	(생략)	보통세	취 득 세	(현행과 같음)	
		등록면허세	(생략)		등록면허세	(현행과 같음)	
		레 지 세	(생략)		레 지 세	(현행과 같음)	
		재 산 세	(생략)		재 산 세	(현행과 같음)	
		담배소비세	(생략)		담배소비세	(현행과 같음)	
		주 민 세	(생략)		주 민 세	(현행과 같음)	
		지방소득세	(생략)		지방소득세	(현행과 같음)	
		지방소비세	(생략)		지방소비세	(현행과 같음)	
		자동차세	(생략)		자동차세	(현행과 같음)	
	목적세		< 삭 제 >	목적세		(현행과 같음)	
경상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사업수입)		(생략)		경상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사업수입)		(현행과 같음)	
<u>시·군 조정교부금(특별 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재정 특례보전금· 지역상생발전 기금 배분금액</u>		(생략)		<u>시·군 조정교부금(특별 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시·군 조정교부금· 시도세 징수교부금· 재정특례보전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금액</u>		(현행과 같음)	
부동산교부세		(생략)		부동산교부세		(현행과 같음)	

[별표 6]

현행		개정안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세출 효율화		1.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	산정방식	산정방식
가. 인건비 건전 운영	(생략)	(현행과 같음)
나. 지방의회경비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다. 업무추진비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라.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① $(1 - \text{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div \text{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times \text{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전국체전·소년체전·장애인체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 행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축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 (신설) ② $\text{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times 50\%$ ※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상위 누적 50%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에서 해당 지방	① $(1 - \text{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div \text{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times \text{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전국체전·소년체전·장애인체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 행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축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 <u>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u> ② $\text{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times 50\%$ ※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상위 누적 50%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에서 해당 지방

현행		개정안
	자치단체의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을 뺀 값이 0보다 작을 경우, 결과값을 0으로 본다. *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 총 결산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전국체전·소년체전·장애인체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 행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축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자치단체의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을 뺀 값이 0보다 작을 경우, 결과값을 0으로 본다. *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 총 결산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전국체전·소년체전·장애인체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 행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축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마. 지방보조금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바. 예산집행 노력	(생략)	(현행과 같음)
사.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운영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상위 누적 50%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결산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비 예산의 일반재원 총액 ※ 2025년 산정분부터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신설)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상위 누적 50%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결산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비 예산의 일반재원 총액 ※ 2025년 산정분부터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비고 1~5. (생략)		비고 1~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세입 확충		2. 세입 확충
반영항목	산정방식	산정방식
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생략)	(현행과 같음)
나. 지방세 체납액 축소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 × 180% ※ 지방세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을 제외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액,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인 지방세 체납액과 밀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미징수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이 종료된 연도의 결산이 끝난 후에 해당 체납액을 산정에 포함한다. ※ (신설)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체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 전전년도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한다. ※ (신설) ※ “①+②”의 결과 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 × 180% ※ (삭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액,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인 지방세 체납액과 밀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미징수액은 체납 누계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이 종료된 연도의 결산이 끝난 후에 해당 체납액을 체납 누계액에 포함한다. ※ 체납액에 정리보류분은 포함하고, 소멸시효 완성분은 제외한다.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체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삭제) ※ 체납액에 정리보류분은 포함하고, 소멸시효 완성분은 제외한다. ※ “①+②”의 결과 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다. 경상세의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입 확충		
라.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 180% ※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u>세외수입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은 제외한다.</u> ※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비용의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에서 제외한다.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체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 ※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을 한다. 다만, <u>전전년도로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한다.</u>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 180% ※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u>세외수입 체납액에 정리보류분은 포함하고, 소멸시효 완성분은 제외한다.</u> ※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비용의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에서 제외한다.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체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 ※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을 한다. 다만, <u>세외수입 체납액에 정리보류분은 포함되고, 소멸시효 완성분은 제외한다.</u>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마. 적극적 세원 관리	(생략)	(현행과 같음)
바. 지방세 감면액 축소	(생략)	(현행과 같음)

[별표 12]

현행	개정안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15조 관련)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15조 관련)
특별자치시 및 시·군·자치구(이 표에서 "자치단체"라 한다)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 $\begin{aligned} & \text{교부 총액} \times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력역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평균 재정력역지수}} \times 50\% + \\ & \left(\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사회복지비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사회복지비지수}} \times 18.2\% \right.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노령인구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노령인구지수}} \times 5.6\%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노인보호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노인보호지수}} \times 2.8\%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 \times 4.2\%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장애인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장애인지수}} \times 4.2\% \left. \right) + \\ & \left(\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지역교육현안수요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지역교육현안수요지수}} \times 3\% \right.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운영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운영지수}} \times 4\%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지원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지원지수}} \times 1.6\%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살ե살지·운영한초등방과후영어체험교실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살ե살지·운영한초등방과후영어체험교실수}} \times 1\%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살ե살지·운영한초등방과후보육·교육학급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살ե살지·운영한초등방과후보육·교육학급수}} \times 0.4\% \left. \right) +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지수}} \times 5\% \end{aligned}$ <비고>	특별자치시 및 시·군·자치구(이 표에서 "자치단체"라 한다)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 $\begin{aligned} & \text{교부 총액} \times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력역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평균 재정력역지수}} \times 50\%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사회복지비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사회복지비지수}} \times 10.4\% \\ & \left(\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노령인구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노령인구지수}} \times 3.2\% \right.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노인보호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노인보호지수}} \times 1.6\%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 \times 2.4\%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장애인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장애인지수}} \times 2.4\% \left. \right) + \\ & \left(\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저출생투자비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저출생투자비지수}} \times 5\% \right.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영유아수 비율}}{\sum \text{자치단체별 영유아수 비율}} \times 10\%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공공보육이용률 역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공공보육이용률 역지수}} \times 9\%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지역돌봄서비스 운영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지역돌봄서비스 운영지수}} \times 1\% \left. \right) +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지수}} \times 5\% \end{aligned}$ <비고>

현행	개정안
1. "평균 재정력역지수"는 전전년도, 전년도 및 해당 연도 3년간의 평균을 말한다. 이 경우 3년간 평균 재정력역지수가 영 이하이면 영으로 한다. 2. "사회복지비지수"는 세출예산(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예산(일반회계)의 비율을 말하고, "노령인구지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 "장애인지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대한 노령인구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장애인 수의 비율을 말하며, "노인보호지수"는 전국 노인요양시설 정원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별 노인요양시설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인구수", "노령인구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장애인 수"는 영 별표 2에 따른 측정단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3. "지역교육현안수요지수"는 "1/자치단체의 수"를 말한다.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운영지수"는 전국의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설치·운영 지원 학교 수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설치·운영 지원 학교 수의 비율을 말하고,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지원 지수"는 전국의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 지원 학급 수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 지원 학급 수의 비율을 말하며, 자치단체별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설치·운영 지원 학교 수 및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 지원 학급 수는 교육부장관이 다음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1)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설치·운영 지원 학교 수 $y = 0.0575744x_1 + 0.0000893x_2 + 42.77944x_3 - 6.01348x_4$ ■ y = 자치단체별 지원 학교 수	1. “평균 재정력역지수 “는 전전년도, 전년도 및 해당 연도 3년간의 평균을 말한다. 이 경우 3년간 평균 재정력역지수가 영 이하이면 영으로 한다. 2. “사회복지비지수 “는 세출예산(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예산(일반회계)의 비율을 말하고, “노령인구지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 “, “장애인지수 “는 해당 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대한 노령인구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장애인 수의 비율을 말하며, “노인보호지수 “는 전국 노인요양시설 정원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별 노인요양시설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인구수 “, “노령인구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 “장애인 수 “는 영 별표 2에 따른 측정단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3. “저출생투자비지수 “는 세출예산(일반회계) 중 저출생투자비예산(일반회계)의 비율을 말하고, “영유아수 비율”은 해당 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대한 영유아 수의 비율을 말하며, “공공보육이용률 역지수”는 1/해당 자치단체별 총 보육대상수(영유아 수)에 대한 공공보육시설 정원의 비율을 말하며, “지역돌봄서비스 운영지수 “는 전국 지역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정원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정원 비중으로 한다. ※ 저출생투자비예산은 양육, 일·가정양립, 임신·출산 등 저출생 대응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공공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 지역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로 한다.

현행	개정안
■ x_1 = 학교 수 ■ x_2 = 학생 수 ■ x_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 ■ x_4 = 평균 재정력지수 ※ y의 산출 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되, 1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1로 한다. 2)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육 지원 학급 수 $y = 0.115247x_1 + 0.005517x_2 + 85.534302x_3 - 11.497862x_4$ ■ y = 자치단체별 지원 학급 수 ■ x_1 = 학교 수 ■ x_2 = 학급 수 ■ x_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 ■ x_4 = 평균 재정력지수 ※ y의 산출 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되, 1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1로 한다. 4. "재산세 부과액지수"는 재산세 부과액(결산액 기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 후 부과액)을 말한다.	4. “재산세 부과액지수”는 재산세 부과액(결산액 기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 후 부과액)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육 지원 학급 수

■ y = 자치단체별 지원 학급 수

※ y의 산출 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되, 1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1로 한다.

개정안